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05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5. 5. 17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5. 5. 18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5. 5. 25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 체계의 개편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이 건축물과 토지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일부 조문과 자구를 수정함.
-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함.

3. 주요내용

-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으로 수정(안 제4조)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의1,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분의 1.5로 조정(안 제14조)
-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안 제15조의1, 제15조의3)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1,000분의 0.7로 한다.(안 제28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4. 12. 3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현행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 결정과 2005. 1. 5 지방세법의 개정공포에 따른 현행 감면 조례상의 조문수정,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표기하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 등 입법필요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문을 수정하였으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 인하 조정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음.
- 향교재단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재산세 세율 조정과 법령 및 자치법규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조례 내용을 표기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지방세법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에 맞게 고성군세 감면조례를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5. 5.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